

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1월 26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3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원만한 견인 업무를 수행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및 불법(부정) 주·정차 견인 업무 일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,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주요 위탁내용(안)

가)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6. 12. 31.(2년)

*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위탁기간은 1년

나) 위탁내용 : 불법(부정) 주·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

- 불법(부정) 주·정차 야간 견인(22시 ~ 익일06시)

-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(평일 07시 ~ 20시)

다) 위탁체 선정 절차 및 방법

- 공개모집
-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신청한 법인 중 최고 득점한 법인을 위탁체로 선정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- 개인형 이동 장치 및 불법(부정) 주·정차 견인 업무 일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- 위탁 사무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서울시 조례 위임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하는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민간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야간 견인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민원에 신속한 대응 수행임.
- 본 동의안은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등의 민간위탁 사무를 구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